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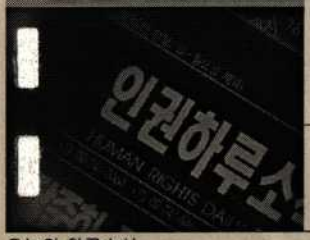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04일 (화)
제 27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2.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3.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4.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편집자주]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낳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비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2회에 걸쳐 분석, 소개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회의원 찬성자 150명을 대표해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과반 의석의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고 한나라당도 반대의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정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을지언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인권단체와의 협의과정 없이 인권위를 포함한 정치권 내부의 물밑 협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몇몇 규정들이 성급하게 포함됐다. 이로써 국가기관들의 끈질긴 반발로 반쪽자리 권한만 갖고 출범한 인권위를 다시금 바로 세우려는 역사적인 작업이, 인권위의 '제 밥그릇 키우기'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게 됐다.

차별업무 인권위로 몰아주기?

분산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들을 적절히 통합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무원칙하게 통폐합한다면 기구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낳으면서 오히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 기능을 인권위로 단일화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원 3~4인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를 두며(제12조), 여기에서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의 차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부칙 제3조). 쉽게 말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없어지고 고용평등위원회는 축소되며, 앞으로 그 업무는 인권위가 수행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인권위가 기존 차별 관련 단체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들 장애인 단체는 인권위에 대해 애초부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 1호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사건에서부터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떨어지고 실효성있는 구제권고도 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남녀 차별의 문제가 인권위법상 18대 차별 사유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것은 (남녀차별 개선 업무의)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지금보다) 좋지 않다"며, "여성단체들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권위원 3~4인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11명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15인의 고용평등위원회의 업무를, 그것도 다른 차별 업무와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 있어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별시정기구의 위상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합의는 물론 제대로 된 공론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별시정기구의 위상을 인권위처럼 독립기구로 할 것이냐, 대통령 직속

으로 할 것이냐, 인권위 산하에 둘 것이냐? 이 문제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를 구성해 2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고서도 아직까지 합의안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주제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시정 기능을 인권위로 단일화하자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차별시정기구의 위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폭력적으로 막게 되며, 국민들은 바람직한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차별 관련 단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인권위는 차별 관련 업무로 더욱 비대해지고, 최악의 경우 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쏟아지는 차별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대안적인 권리구제 절차도 붕괴해 버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차별 관련 단체들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관료화의 첩경: 상임위원·사무총장 겸직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사무총장을 겸직한다(제16조)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위원회와 사무처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던 1기 인권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데, 이 개정안이 1기 인권위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고 1기 위원장의 연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던 당시 발의됐다는 사실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원 한명한명이 인권옹호를 위해 필요한 집행력을 갖는다는 일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원·사무총장 겸직 규정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만이 사무처의 집행력을 독점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위원 모두의 권한 강화라는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인권위의 특정 몇몇에게 집행력이 집중되는 것은 폐쇄적 운영과 함께 관료화의 지름길임을 1기 인권위는 극명하게 보여줬다.

개정안의 내용과는 별도로, 2기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곽노현 방통대 법학 교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상임위원·사무총장 겸직 규정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인권단체들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2004년 2월에 전기세를 내지 못하여 단전된 장애인 부부가 석기시대의 사람들처럼 촛불을 켜고 살다가 불타 죽은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단전단수 가구수는 89만에 이르며 잠재단전단수가구를 합치면 백만가구에 육박한다(조선일보).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원칙은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원리이며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과정 중의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는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조명기구, 가스레인지와 같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재화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연체되면 단전단수가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다. 설령 조명기구가 압류금지 품목으로서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한들, 전기가 끊긴 집 사람들에게 조명기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도와 가스가 끊긴 가정에 설령 가스레인지와 밥솥이 남아 있다고 한들 어떻게 끼니를 끓일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재화의 압류를 금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생명줄이 적법한 채권회수 절차가 생략된 채 끊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후하여 노인·장애인에게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바로 빈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장결함과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에서마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류 경제사회로 재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한계선상의 위기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주류 사회로 동참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에는 '에너지 기본권 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다.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내는 가구들을 위해 프랑스 전력은 연간 1억유로(1700억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전기요금 체납자 관리와 지원사업을 편다고 한다. 우리도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과 유사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기, 수도와 가스와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가난으로 인하여 체납되더라도 끊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류정순 님은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1. 끝내 승리하리라!

국보폐지국민연대 비상시국회의(12.22)/ 한나라당과의 야합의 책임자 천정배 의원 규탄 봇물(12.26)/ 국보법 연내폐지 원로선언·시민단체 대표자들 농성돌입·민주화교수협의회 결의대회·민변 결의대회 및 단식농성(12.28)/ 국민단식농성단 중 2백 여명 '연내 완전폐지 주장'하며 물과 소금도 끊고 결사 항전 농성단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공관 앞 집회 국보연대 '국회의장 직권상정, 연내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앞 밤샘 농성 시작(12.29)/ 농성단 대체입법론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 국회 진격 투쟁 수십명 부상·참의료실천단과 보건의료연합, '농성단 생명 위급'알리는 긴급기자회견 열어 정치권에 국보법 연내 폐지 촉구·여야 대표 국보법 및 사학법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밀실 합의문 서명(12.30)/ 농성단, 여야 대표 밀실 야합에 대한 규탄 시위로 또다시 대규모 부상 속출·한나라당의 점거로 열리지 못하던 국회 본회의, 국회의장이 '과거사법'마저 제외한 직권상정으로 속개… 국보법 연내 폐지 끝내 무산(12.31)

2. 비정규직이 죽어야 사는 나라?

김춘봉 씨, 한진중공업 마산공장에서 20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다 정리해고 당한 후 촉탁직에서 고용계약 거부당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하며 자살(12.27)/ 금속노조, 한진과 고 김춘봉 씨 죽음과 관련해 △회사 사과문 작성 △사내하청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과 노조활동 보장 △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 합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고 김춘봉 씨 죽음은 '구조조정-비정규직화-외주하청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라며 노동 유연화 정책 및 비정규 확산법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안 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12.30)/ 고 김춘봉 씨 장례식 치뤄져(12.31)

<기사 처음으로>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스무 엿새 동안 물만 넘겼던 너는 마지막 날 미음 한 컵을 겨우 넘겼다. 2004년 마지막 날 결국 국가보안법은 보수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국회의사당 의장석을 넘지 못했다. 네가 스무 엿새 그토록 목이 터져라 "연내 폐지"를 외쳤지만…(중략).

새벽바람이 서울을 강타했던 12월 마지막, 그 날에도 너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찾아가 요구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도 너는 촛불을 밝혔다.

12월 30일 단식농성 25일째, 수구본당 한나라당과 한밤중에 야합한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론을 대체입법안이라고 들고 와 집권여당의 당론마저 변경하려는 술책을 부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만나 당론 후퇴 불가를 외치면서 화가 일었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더욱 가열차게 요구해도 모자라는 판에 대체입법이라니, 그날 열린우리당의 의총은 당론 변경 의제를 부결시켰다. 그때 너는 국회 앞 진격투쟁의 현장에 있었다. 너의 생명을 유지해주던 물과 소금마저 끊어버린 끝장 단식 농성으로 동지들이 새벽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다. 그날 배신을 꿈꾸는 국회를 향해 단식농성단은 국회진격 투쟁을 전개했다. 국회 앞 도로를 너를 비롯한 단식자들이 점거했지만, 경찰은 폭력으로 응수했다. 물마저 포기한 너의 육신으로 흐느적흐느적 국회 앞 도로까지 혼신의 힘으로, 마지막 힘까지 쏟으며 달려갔지만 단식대오를 막아선 것은 경찰들이었다. (중략) 방패로, 군화발로, 그들은 경찰버스로 연행해 가고, 너는 그날 피흘리며 쓰러진 어느 여성 동지를 경찰로부터 보호하며 눈물범벅이 되어 울부짖었다. 취재기자들마저도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그 현장에서 네 쇠잔해진 몸으로 그렇게 경찰의 폭력을 가로막다 사지가 들려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졌다.

국회 안에서 난 인터넷 뉴스를 통해 그 사진들을 보았다. 너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그 현장 사진들을 당장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 놈들아,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간다." 난 외치지 못했다. 의총에서 대체입법안을 부결시켰다며 희희낙락하는 열린우리당의 철부지 강경파 의원들에게 겨우 밖의 상황을 약간 설명하고 그 자리를 떴을 뿐이다. 자세히 설명도 못했다.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려면 주체할 수 없는 설움과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날 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물과 소금마저 버리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그 마당에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한밤에 다시 모여 협상에 서명했다. 국가보안법은 2005년 2월에 다루자는 것, 3+1도 아닌 2+2로 협상이 된 것이지만, 그 합의마저도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다시 기사회생, 이제 명분만 찼던 국회의장이 국가보안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했지만, 국회의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라고 버텼고, 다음날 개혁입법들은 모두 직권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겨졌다. 국회의원들은 수구의 괴수 박근혜 당이 제안한대로 '1+3'을 수용하고 마지막 항의도 못한 채 새해를 넘기고 여야가 덕담을 나누며 인사했다.

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마지막 날까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했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차마 네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네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때 나는 상황실을 지켰다. 낮이 없고 밤이 없던 상황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치권의 기류를 감지하고, 매일처럼 잡혀 있던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와 촛불집회에 쓸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쓰면서 난 너와 너의 동지들의 투쟁을 문장 속에 담아내려 애썼다. 매일 드나들던 국회는 우리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목소리는 방음장치로 철저하게 가려진 국회의사당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외면했다, 배신했다.(중략)

미음 한 컵 들고 농성텐트로 가는 단식농성단 대오 속에 너도 있었다. 말없이 끌어안았다. 부둥켜안으며 고생했다는 말밖에 못했다. 정녕 하고 싶었던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너를 보냈다. 미안하다. 너와 함께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함께 굶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와 함께 여의도 칼바람을 맞았어야 했는데, 너와 함께 국회 앞 도로로 진격했어야 했는데, 그게 내 몫일 텐데, 정말 나누고 싶었던 선물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였는데….(중략)

이제 다시 투쟁을 준비하자. 네 여윈 몸을 다시 살찌우고, 기력도 회복해야지. 우리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집단단식농성투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떠올렸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수구는 분열되고, 그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소수 세력으로 몰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수구들이 끝까지 지키려던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패배했지만, 그래서 승리했다.(중략)

네 여윈 몸을 잘 추스려야지, 야윈 몸에 살이 오르고, 기력이 빠진 근육마다에 다시 힘을 불여와야지. 밀린 일들 잠시 접어두고 고단한 몸 좀 쉬거라. 준비 없이 맞은 새해 계획도 세울 겸, 푹 쉬어라.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정말 끝장내는 싸움, 승리하는 싸움을 하자, 이 겨울에 씨앗을 뿌리고 돌아가는 나의 너여, 사랑하는 동지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래군]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05일 (수)
제 27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2. 미리 가보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3. <분석> 인권위법 둘밀 개정 중 (하)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조1동에 사는 김종남 씨는 부인과 함께 집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각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던 김 씨 부부는 그곳에서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인감증명 발급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강제로 지문날인을 하게 했다는 것.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동사무소 직원이 손가락을 잡아끌어서 지문날인을 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이에 김 씨는 지문날인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관련법규를 제시해 줄 것과 동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동사무소 측은 이를 묵살하며 김 씨를 동사무소 밖으로 밀쳐냈다.

이에 대해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업무 마감시간에 맞춰 급하게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문을 찍게 되었지만, 강제는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자신은 시행령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지문날인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감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명이나 무인(지장)을 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문날인 외에 본인의 서명으로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일선 관공서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관행상 모든 민원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동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성형수술 때문에 얼굴변형이 많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 아니냐"며 지문날인을 당연하게 생각해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다음날 상급기관인 순천시청 민원실에도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 역시 무시당해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래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문으로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인 권리를 행사하는데 인감을 떼어야 하고 지문을 통해 국가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강력한 국민통제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도장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문이라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전국민의 지문을 왜 국가가 수집해야 하는지,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결국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지문날인에 대한 항의로 불편을 겪은 김 씨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주민등록제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정당한 것 마냥 민원인을 다그치는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서글픔을 느낀다"고 전했다.

<기사 처음으로>

미리 가보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의 시선으로 인권운동 내부 들여보기

2002년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시작한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세

번째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6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다.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여러 가지 인권운동의 이슈를 살펴봤던 1, 2회 대회와는 달리 하나의 의제를 중심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바로 '반차별'의 시선으로 그동안의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핵심 과제인 것. 이에 따라 '반차별의 시선'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교육, 형사사법절차, 가족, 노동을 주제로 4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해 온 '반차별 포럼'의 성과와 과제들을 풀어내고 이를 평화, 정보인권 등 각 영역별 운동에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인권운동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차별의 문제점을 들여보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번 대회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모임은 '활동가 수다방'을 인터넷에 개설하고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여 준비를 철저히 했다. △운동사회 내 위계 △운동사회 내 성역할 분담 △선후배 운동세대 간 차이 혹은 갈등 △활동재정 원칙 △활동가는 이래야 한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우리 안을 비추는 거울'에서는 주제별로 수다방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관심 있는 방에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한 자리에 모여 수다방에서 나온 주요 문제점을 상황극 형식으로 보여주고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외에도 '인권운동 되돌아보기'를 통해 2004년 한해동안 벌여 온 주요 인권운동들을 참가자들이 되돌아보고, 평가와 과제를 공유한다. 또 '아! 이 운동!'에서는 대안적인 인권운동의 모델을 모색한다. 대회 준비모임은 "판에 박힌 기자회견, 인권위 진정, 집회, 법률투쟁 등에 갇혀 온 인권운동의 현재를 반성하고, 최근 새로운 시도로서 주목받았거나 대안적인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운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운동판을 새롭게 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기사 처음으로>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인권위법 개정안에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인권위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들의 반발에 의해 무력화된 인권위의 권한이 개정안에서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

현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독직폭행, 직권남용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없다(제32조 1항 5호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해 왔다.

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서면진술서를 받아야 한다(제36조 4항). 이는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인권위의 시급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사사건 조사금지 조항 및 서면조사 우선 조항 등 인권위법 제정 당시부터 비판받아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을 삭제했다.

대폭적인 권한 강화

개정안은 또 인권위법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인권위의 정책개선 권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검토와 개선권고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법령·정책 등에 대한 중지 권고를 인권위의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제19조 4~5호), 인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국가기관의 의무로 명확히 했다(제20조의2).

개정안에서는 인권위 진정범위 및 조사대상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외국인에서 국내법인 및 국내 외국법인까지로 확대했고(제4조),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던 기존의 권한을 국가기관이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경우도 조사가 가능하게 했다(제30조 1항 1호). 이렇게 되면 인권위는 정부가 출자한 상당수의 공단과 공사, 공기업 등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기업에도 구제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진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제32조 1항 4호), 이 기간 중 발생한 의문사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도록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했다(제19조 7호).

인권위의 독립성 및 기능도 강화됐는데, 개정안은 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5항). 이렇게 되면 국회, 법원 등 기존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권위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제50조의2를 신설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동행명령 권한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인권위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제45조 5항).

그밖에 개정안은 인권위가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고(제16조 6항), 교정·보호 시설 내 진정함 설치를 의무화했으며(제31항 8항), 권고를 받은 기관장이 권고의 이행 여부 및 결과를 인권위에 통보하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했다(제25조 4항).

문제는 인권위의 의지

차별 업무를 인권위로 통합하는 '비대화 규정'과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관료화 규정'을 제외한다면,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은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인권위는 지금보다 활발한 인권 옹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제도 등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1년이 경과한 진정사건의 조사, 의문사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은 굳이 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 인권위법을 적극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도 1기 인권위에서 가능했던 업무들이다. 따라서 1기 인권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법·제도적 한계라기보다는 순전히 인권감수성과 인권옹호의 의지 부족으로 보아야 한다. 인권위법이 아무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더라도 2기 인권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고리를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인권위법 제정 시에도 그러했듯이, 이번 인권위법 개정 과정에서도 법무부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기관의 반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대목에서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설립됐던 1기 인권위가 인권위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인권단체들을 무시하고 급속히 관료화되었던 경험을 상기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마냥 지지를 보낼 수만은 없는 처지다.

결국 2기 인권위는 인권단체들과의 협의과정 없이 개정안에 성급하게 포함된 비대화·관료화 규정에 대해 집착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한 많은 경우 할 수 있었던 업무들을 법 규정의 소극적 해석으로 스스로 포기했던 1기 인권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인권옹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이 인권위가 바로 서는 첩경임을 2기 인권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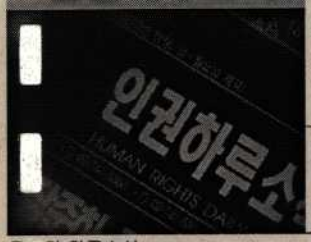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06일 (목)
제 27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조직적 범죄 '무노조 경영'
2.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3.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4. <공지>

조직적 범죄 '무노조 경영'

이마트, 노조결성에 '광분'

거대자본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 용인 수지지구에서 또다시 터져나왔다.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에서 일하는 계산원(캐셔)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2명의 노동자들은 지난해 경기일반노조에 '극비'리에 가입한 후 12월 21일 경기일반노조 이마트 신세계 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이들에게 가해진 '노조탈퇴 공작'은 '최저가격'을 자랑하는 이마트의 '최고수준'의 인권탄압을 보여줬다. 회사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장시간의 개인면담을 수시로 진행했다. 노조 설립 후 12월 29일 해고 통보를 받은 이종란 씨는 "면담이 아니라 사실상 노조탈퇴를 강요하기 위한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면담이 끝난 후 귀가하려는 최옥화 분회장의 차를 못가도록 막아서는 바람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나서야 최 씨는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최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에 가는 와중에도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원들에 대한 감시도 공공연하게 진행됐다. 이 씨는 "매장 내에서 보안들의 감시는 공공연했고 심지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때까지도 감시의 눈길은 떠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게다가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회유 작업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주)신세계는 1997년 '완전독립 경영'을 내세우며 삼성그룹으로부터 공식 분사됐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는 '삼성가 인물'인 이명희 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그룹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시도에 감금과 감시, 가족·친지를 통한 회유 등을 통해 노조원들을 탈퇴시키고 '노조의 싹을 밟아버리는' 행위는 거의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1998년 울산 삼성SDI에서 일하던 송수근 씨가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그 전날 회사 직원들은 송 씨를 강제로 납치해 24시간 동안 감금해 집회 참석을 방해했다. 역시 울산 삼성SDI 직원이었던 윤모 씨에 대해 회사는 삼성그룹에 다니는 윤 씨 친인척들의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은 후 그들로 하여금 윤 씨의 활동 중지를 회유하게 했다. 2001년 회사에 의해 납치된 삼성SDI 직원 최영주 씨는 4일 동안 이나 밀양, 중산리 등지로 끌려다니며 공갈과 협박에 시달리다 감금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다.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는 삼성의 노무관리는 오랫동안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88 삼성 노사관리지침 제4호'와 '89 비상노사관리지침'을 비롯해 1997년 삼성코닝 노무관리 책임자 김형극 씨가 폭로한 '345 사업장 수호 지침'은 삼성의 노무관리 지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소위 '345 지침'은 임금단체협상 시기가 집중돼 있는 3월, 4월, 5월 기간에 노동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노사관리지침이다. 이 지침은 '사업장 특별노사팀'을 여론수렴조, 문제사원 관찰조, 문제단체 관리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근 사업장 내 관리대상 노조 및 사업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극비 문서인 1998년의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노조설립 상황 발생 시에는 '문제사원' 1대1 밀착관리를 통해 감시체제로 돌입하고 인사조치 및 격리까지도 지시하고 있다. 상황실 분석조는 격리조, 타격조, 설득조 등으로 나누어 격리조는 주동자를 격리한 후 탈퇴를 유도하고, 타격조는 주동자 및 동조자의 행동을 감시한다. 설득조는 주동자의 가족, 추천인, 보증인 등을 동원해 자진탈퇴를 종용하도록 한다. 특이할 만한 것은 '대외 정보망 강화'를 위해 기무사와 당시 안기부에게까지 담당자를 배치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서는 노사 가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 노동자들은 분회창립 소식지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 권리야말로 노동조합을 하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계약직 철폐 △일방적

인 연장근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창립총회에 함께 했던 22명의 조합원 중 현재로서는 해고된 이종란 씨를 비롯한 4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지키고 있다. 5일 최 분회장을 비롯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회사는 이들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문을 8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기사 처음으로>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도시철도노조,

끔찍한 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 사고에 이어 지난 3일 또다시 서울의 7호선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안전대책'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화재 예방 비상대책회'를 열고 "운행에 차질이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동차의 불연내장재 교체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는 구형 전동차로 '불쏘시개' 전동차라고 불릴 정도로 불이 났을 경우 무방비 상태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도 정부는 "지하철 내부를 모두 불연재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안전교육과 방재시스템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전동차를 불연재로 바꾸지 않는 한 대형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누차 전동차의 불연재 전면교체의 시급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전동차의 의자조차 모두 불연재로 교체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장의 이번 발표도 사고 이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떠들썩하게 발표되는 전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노동자들이 '1인 승무제' 등 무리한 인력감축이 화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파업도 불사한 '인력충원' 요구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어 대구참사와 같은 사고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아래 도시철도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지하철의 사고는 대부분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사 안전인력, 열차의 2인 승무, 차량의 안전점검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정부와 공사는 오히려 인력 감축, 정비 용역화를 서두르며 지하철안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하철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의 뒷부분인 7호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기관사로부터 140여m, 차장석으로부터 20여m 떨어진 지점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5일 성명에서 "1인 승무제에서 기관사가 뒤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곡선 구간의 140m 뒤편을 볼 수 있는 천리안이 있거나, 왕복 300m를 30초 이내에 내달려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인력충원을 제외하고 통신시설의 일원화라거나, 시스템의 정비 등을 논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인력감축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미 1998년 부산대 경제·경영연구소가 연구한 '1인 승무와 2인 승무 비교 결과'에 따르면, 1인 승무제의 '사상사고 발생율'은 2인 승무제의 2배, 주행장애율은 2인 승무제보다 6배나 높다. 결국 인건비 감축을 통한 정부의 이윤 추구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철도노조는 "구조조정으로 아끼는 비용보다 인력부족으로 (사고로 인한)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며 '2인 승무제' 도입과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국보법 폐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국민연대는 5일 정치권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폐지'에 다시 한 번 쐬기를 박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와 '보수화'를 지적한 국민연대는 특히 이부영 전 당의장을 '역사의 죄인'으로 지목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마지막 날까지도 원내대표를 제쳐놓고 한나라당과 물밑 접촉을 하며 국보법에 관한 당론을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폭 수용한 안으로 변경하려 시도했다"고 밝히면서 "그런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이른바 '강경파'에게 책임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남기고 물러났다"며 분노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을 향해야 할 칼날을 열린우리당 내의 폐지 당론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개혁 세력에게 돌려 개혁 전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렬 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인권·시민사회 관계자가 모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열린우리당을 향해 국보법 폐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종렬 대표는 "국회를 점거하는 쿠데타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한나라당에 끌려 다녀 개혁열망을 좌절시킨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지 않으면 넝마 같은 꼴로 와해되고 말 것"이라고 꾸짖었다. 전국여성농민회 윤금순 회장도 "열린우리당이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 한다면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또한 한나라당 역시 역사의 죄인임을 빠뜨리지 않았다. 제1야당이 국보법과 같은 반인권, 반민주 악법 사수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국회 회의장를 장기간 점거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권의 공멸로 이어지고, 헌정사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대는 오는 12일 전국의 집행책임자들이 모여 향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공지>

6일부터 2박3일간 열리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 참가하는 관계로
인권하루소식은 다음주 11일(화)부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새해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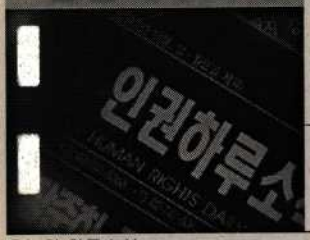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11일 (화)
제 27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인권의 감수성을 채워라
2. 우리 안에 차별 '있다?'
3. ◐ 미니의 인권이야기 ◑ 우리 곁의 평화
4. 미화원 노동자들 돌리는 검찰

인권의 감수성을 채워라

제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열려

전국 곳곳의 인권침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6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제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바로 그 자리.

2002년에 진행된 1회 대회에서 국내 인권운동 10년의 역사를 돌아보았고 2003년 2회 대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문제의식을 더 깊이 공유했다면, 이번에 열린 3회 대회에서는 인권운동 내부를 성찰하는 자리였다. 인권운동 내부를 돌아보며 새로운 운동의 흐름과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제를 함께 도출해보는 작업에 좀더 집중했다.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아래 준비모임)은 "인권운동 전반을 가로지르는 문제의식을 과감하게 선택, 집중함으로써 대회 이후 단 하나의 실험이라도 줄기차게 이어나가기 위해 '반차별'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다"고 이번 대회의 목표를 설명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운동이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가장 광범위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 사안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인권과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혀내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반차별 포럼'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동안 준비모임은 2004년 한 해 동안 '반차별 포럼'을 진행하며 교육과 형사사법절차, 가족, 노동과 관련된 차별 현실을 살펴보며 기존의 인권기준을 반성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인권운동 진영에 던져왔다. 이번 대회에서 배 활동가는 네 차례의 반차별 포럼을 평가하며 "이러한 실험은 기존의 인권 개념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차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인권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정리하지 못했고 다양한 인권단체에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역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케이 활동가는 인권운동 진영이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점들로 △성 장애차별 △이성애중심주의 △나이 권위 학력주의 △수도권중심주의 등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는 즉석에서 모둠별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인권교육과 반차별 모둠에서는 인권교육이 고학력 한국인 위주로 교육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글을 읽지 못하거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제기됐다. 또 사회권운동과 반차별 모둠에서는 그간 장애인 이동권이 비장애인들에 의해 인권으로 인식조차 되지 못했던 점이 지적됐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인권놀이터'를 통해 인권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인권활동가들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데는 익숙하지만 몸으로 인권을 표현하기는 낯설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체조 비틀기' 등을 통해 온몸으로 인권의 감수성을 체득하고자 시도했다.

한 해의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연대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 고군분투한 이번 대회 이후 인권단체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될지, 전국인권활동가대회와 함께 출발한 2005년 인권운동의 미래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우리 안에 차별 '있다?'

<활동가대회 수다방 들여다보기>

"인권운동이 차별에 반대하는 가장 광범위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소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으로 시작된 '활동가 수다방'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운동을 해 나가면서 혹은 조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갈등이나 억압 등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를 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인권운동 내 성역할 분담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은 조직 내에서 컵 닦기, 청소하기 등 가사노동의 성격을 갖는 업무는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해 어느 정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분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대외적인 업무나 주요직책들은 남성활동가들이, 사무실 내부의 실무 위주 역할은 여성활동가들이 수행하고 있어 성차별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여성활동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배려한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성차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실제 집회나 행사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당연히 여성위원회의 몫으로 넘겨져 육아의 짐을 여성들에게만 지우고 있었다.

나이, 경험 등 선후배 운동세대간의 갈등과 위계질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수평적 관계를 지향해야할 연대활동에서 큰 단체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성과가 집중되는 등 단체간의 위계질서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 활동가는 "사회운동 내에서도 여전히 선배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나이, 경험, 성별 등의 위계질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활동에 큰 벽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활동가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인권활동가들에게 하나의 억압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거나 일상에서도 활동에서 가지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 활동가가 지녀야 할 태도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몸이 아파도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하거나, 화려한 옷차림을 지양해야 한다는 등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잘못된 도덕성에 대해서는 사라져야 할 고정관념으로 지적됐다.

비록 '비밀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각 모둠별 토론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운동내부의 '치부'를 덮어두기보다는 드러내고 소통함으로써 활동가들간에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 미니의 인권이야기 ◑ 우리 곁의 평화

며칠 전 울산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곳에서 '평화바램 영화제'를 열었고 마지막날 평화에 관해서 청소년들과 같이 얘기하는 자리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1 여학생들이어서 자연히 학교와 여성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와서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통이 다 차면 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매일 매일 비우라고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 방송을 못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학교는 평화로우냐는 질문에 대한 한 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교육을 앞세운 인권침해와 폭력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학생 인권의 현실입니다. 인권과 평화가 무엇인지 배우고 체험해야할 학생들이 오히려 비인간적인 대우를 억지로 견디며 결코 평화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학생들이 얘기한 또 하나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외모입니다. 취직을 할 때 회사에서 외모를 먼저 보고 실력을 나중에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 선택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입니다.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을 나눠 놓고 여성들에게는 '여자다운' 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의 삶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만약 남성들이 취직을 할 때 다리 모양이 어떤지, 몸무게가 어떤지, 얼굴 생김새가 어떤지가 채용 여부의 주요 기준이 된다면 언론에서부터 커다란 '사회문제'로 취급했을 겁니다. 오죽 했으면 한 학생은 "여자들도 군대 가야 돼요"라고 했을까요. 일상에서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로운 세상일지 모르지만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계속 차별 받고, 그 이유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평화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는 전쟁과 같은 커다란 일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곁의 일입니다.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평화는 이것이야'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생각해 봐요. 과연 나는 어떤 때 평화가 깨진다고 느끼는지… 노동자·여성·학생·장애인 등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이유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써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 속의 평화입니다.

◎미니 님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기본권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아래 인천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 미화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4년 10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의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미화원 분회(아래 미화원노조)를 설립해 회사와 교섭을 벌였지만 인천검찰청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노조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가장이 대부분인 이들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10시간 동안 인천검찰청사를 청소하며, 법정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에도 미치지 않는 59만여 원(수당 포함)을 받아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12년 이상 일한 장기 근속 노동자들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회사측이 연 200% 지급하던 상여금조차 2004년 하반기부터 남성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 현재 미화원노조는 이를 남녀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해 놓았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미화원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연·월차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화원 노조는 현재까지 모두 6차례 회사 측과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보장 △연월차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노동조합 활동보장 △고용안정 △남녀차별적 삭감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인천검찰청은 점심 휴식시간을 이용해 미화원 노동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까지 노조활동은 안된다며 이들을 청사정문 밖으로 몰아내고,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찾아온 동료조합원들을 세 차례나 가로막는 등 막무가내식 탄압으로 미화원 노동자들의 설움을 더하게 했다.

10일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 연대 집회를 연 미화원 노조는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노조활동 보장"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사 처음으로>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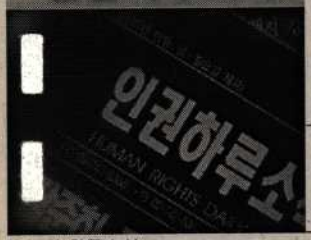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12일 (수)
제 27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2.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3.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편집자주> 호주제 폐지논의는 이제 남녀차별의 문제를 넘어 신분등록제도를 새로 짜는 작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발표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의 원칙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효율적 유지·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내걸며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람마다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하며, 여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범위에 맞게 가족증명, 일반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을 따로따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신분등록에 가족정보 필요 없다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1인1적 편제방식에 가족의 신분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신분등록부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에는 목적범위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다른 정보와의 연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본인 및 가족의 신분사항과 신분변동사항에 대해 목적범위에 맞게 증명양식을 발급함으로써 신분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선택해 출력하는 문제로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범위와 목적 등의 정확성을 지켜낼 때만이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다.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가족을 매개로 한 수직적 국가통제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타리 활동가는 "호주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신분을 호주와의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호주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개인신분을 또 다른 가족을 통해 증명하려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호주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여전

더욱이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은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포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대법원의 안이 개인별 신분등록제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기준인이 '본인'이 되는 '가족별 편제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모든 개인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 틀이 된다는 인식은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한다. 결국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에는 대법원이 기본 원칙으로 삼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가 제대로 녹아들어 있지 않다. 끼리끼리 케이 활동가는 "대법원안은 1인1적 '가족부'일 뿐이다. 기본 포맷이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소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가족별 편제와 다를 바 없다"며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기입할 수 없어 공란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그 자체가 차별을

매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을, 법무부는 '가족별 편제방식'을, 인권단체들은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목적별 편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목적별 편제방식에 대한 소개는 13일자로 싣습니다.)

<기사 처음으로>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국회의 계속되는 파행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조식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200여명의 피감호자들 중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2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당정협의가 끝났다고 알려졌던 폐지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농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이번 단식농성의 책임은 정기국회에 이미 150여명 의원의 서명으로 폐지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정쟁만 일삼다 처리를 임시국회로 넘긴 국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가두어 두는 것으로 교정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보호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또 다른 이유는 가출소 심사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출소 여부가 '감호소 안에서 얼마나 착실하게 생활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이중 처벌이라는 비난 속에서 법무부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를 동의한 마당에 피감호자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사회보호법이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1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이에 부합한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출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청송감호소에서 곡기를 끊어가며 반인권악법으로 맹위를 떨쳐오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는 피감호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철저히 외면 당하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향해 새해 벽두를 단식농성으로 시작하고 있는 피감호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이번에는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지난 12월 노동부에 의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주)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노조를 사찰·감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특수경비대가 노조 간부에 대해 실시한 불법 사찰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가 폭로된 것.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아래 사내하청지회)는 2003년 3월 28일 노조 설립 후 "회사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측(아래 아산공장)은 2003년 7월부터 1년 동안 현대자동차노조 아산본부(아래 아산본부)에 약 8회에 걸쳐 '해고자 현장 출입통제 통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경비업무 수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첨부자료로 사진채증자료인 '협력업체 해고자 불(탈)법 행위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아산본부는 "경비업체가 사내하청지회 감시를 빙자해 노조 주변을 상시적으로 순찰·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조치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회사측의 '해고자 현장 출입통제'는 다분히 사내하청지회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조합원들을 겨누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회사는 해고자만을 사찰한 것도 아니었다. 사찰대상에는 사내하청지회 원문숙 조합원을 비롯해, 사내하청지회 홍영교 지회장, 신명균 조직1차장, 양회삼 조합원 등 해고됐다가 2003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용결정을 받아 복직되거나 2004년 8월 교섭을 통해서 원직복직됐던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사내하청지회 해고자 중 나머지 6명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04년 10월 22일, 회사측에 의한 사찰 의혹이 지속돼 오던 중 아산본부는 경비대 D

반의 근태일지, 업무지시 명령, 근무일지, 차량출입일지 등 일련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후 아산본부는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같은해 11월 3일부터 3일 동안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비대 D반은 매일 개인의 출입·잔류여부, 유인물 등의 선전물 지참여부·배포행위, 1인시위 여부, 대자보 부착행위, 조합사무실 방문인자 확인 등 광범위한 내용의 사찰활동을 진행했다. 근무일지 기록의 80% 가량은 사내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20% 가량은 아산본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반면, 경비대 D반 운용에 대해 아산공장은 "경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조사단에게 밝혔다. 하지만 아산공장에서 다른 경비대는 3조3교대로 운영된 반면 경비대 D반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인 평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노조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은 휴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다른 경비대와는 달리 인근 아파트에서 합숙하면서 '5분대기조'를 운용하고, 비상소집을 대비해서 '호출훈련'을 수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지회는 '경비대 D반'과 같은 경비대에 의한 불법 사찰활동이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의 책임만이 아니라 아산공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2004년 10월 경 경비대 D반의 '1주년 회식'이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경비대 D반의 활동이 사내하청지회가 만들어진 후 2003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비 용역업체는 바뀌었어도 경비대 D반의 활동은 지속됐다. 또 진상조사단이 경비업체 방호대장에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방호대장은 "내 권한이 아니니 본사 과장과 통화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사내하청노조 권수정 지회장 직무대행은 "현대자동차 본사에 경비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직무대행은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경비대가 따라붙으며 감시를 한다"며 "경비대의 감시가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ILO '노동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한 사찰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 뿐만 아니라 2001년 기아자동차에서 폭로된 「비정규직노조 설립관련 관리방안」,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같은 불법적인 사찰행위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돼 왔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사찰활동 중단 △사내하청노조 활동 보장 △불법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실시 등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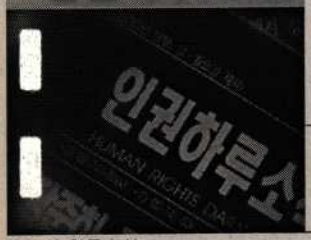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13일 (목)
제 27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2.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3.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현재 미국 텍사스 군사법정에서는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규명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11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변호인의 변론은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촬스 그레이너 상병을 기소한 군검찰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가이 위맥 변호사는 "치어리더들이 늘 하는 일이라며 이들이 1년에 (포로들이 피라미드를 쌓은 횟수인) 6~8번만 이러겠느냐"는 기가 막힌 논리를 폈다. 또 알몸의 수감자가 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끌려 다니는 사진에 대해서도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띠를 묵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엉망진창인 수용소를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언론의 빈축을 산 이 궤변은 그러나 한 번의 '해프닝'으로 넘겨버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9.11 이후 반인권적 발언이나 '애국자법'과 같은 정책들로 인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역시 "전반적인 미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며 "9.11 이후 미국의 인권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번 발언은 이를 반영한 한 예"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아부그라이브 사건 이후에도 이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명령체계가 그대로 용인되고 있고, (전쟁 범죄자인)부시가 재신임 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제국의 오만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분노하는 오두희 활동가는 "그것이 바로 미국 인권의 수준이며 이는 미국이 이미 파시즘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일갈했다. 제네바 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만행에 대해 민중적 대응과 통제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한다는 오 활동가는 "부시 재취임 반대 운동을 미국의 도덕성 타락과 인권불감증을 규탄하는 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내다보기도 했다. 전범민중재판 기소인으로 참여했던 안병수 씨는 "변호인의 논리가 얼마나 박약한지 실소할 뿐"이라고 평했다. 그는 또한 "아부그라이브 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미국 법정에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아직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민중재판 같은 상징적인 법정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화운동의 지속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바그다드에서 열린 미군사재판에서 프레데릭 부사관이 8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이는 관타나모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지휘계통으로 저질러지는 조직적 범죄에 비교해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이 고문방지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인권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멋대로 독주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아부그라이브 사건이 '인권'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사상 최악의 지진해일 피해를 겪고 있는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정부가 두 번 울리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치를 발표했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월 3일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피해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다.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약 10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강제추방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20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입국 및 재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결국 '자진출국유도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래 외노센터) 김영준 활동가는 "이번 특별조치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당사국 이주노동자들이 한걸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2004년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자진출국을 하는 노동자들에 한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합법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재입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김 활동가는 "애초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비자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노센터 박천응 소장도 "정부가 본국에 갔다 온 이주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말하지만 현지에 또 다른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재취업을 보장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는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의 가치가 신분등록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해 연구, 검토를 해왔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별 편제방안'을 내놓았다. 목적별 편제방안은 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변동되는 사건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별 편제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의 신분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는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가 있고 혼인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가 있다.

『신분등록부』는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최신의 내용만 기록되고 이전 사항은 『신분변동부』로 관리함으로써 『신분등록부』만으로는 신분변동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변동 전 『신분등록부』는 [신분변동번호]가 매겨지고, 신분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이러한 『신분변동부』는 별도로 관리된다. 신분등록제도에는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담지 않으며 다만,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친자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가혼(假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신고일]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망, 국적상실, 이혼, 재혼 시 『혼인등록부』는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여기에는 [혼인변동번호]가 매겨지고, 혼인변동 '사유' 등이 기록된다.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고 『혼인등록부』에도 가족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담지 않는다.

이러한 각각의 공부를 구별하는 '번호'는 당사자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음으로써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폐해를 방지한다. 목적별 공부는 등록번호, 변동번호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동일인 여부,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검색번호로 한 사람의 모든 등록부와 변동부를 검색할 수 없게 하고 연동을 금지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신분등록 사항에 어떤 정보를 수집·기록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기는 정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신분증명과 관련 없는 혈연가족 사항을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가족해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분등록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호주제 폐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호주제의 문제점을 끌어안고 가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삶이 '비정상'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행정상의 효율을 편의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14일 (금)
제 27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KT의 잇따른 보복인사'
2.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3. 태국 이주노동자 탄압에 '멜로 카드'
4.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KT의 잇따른 보복인사"

상품판매팀 해체 후에도 인권침해 논란 여전

노동자 감시와 차별로 질타를 받았던 KT의 상품판매팀이 지난 1일 해체되었다. 그러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사발령의 부당성과 함께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를 제기해 KT 상품판매팀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전북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고객시설과로 발령을 해 보복인사와 함께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객시설과는 전화선 가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현장 업무이며 여성노동자가 배치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발령 받은 여성노동자들 114에서 근무했던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지역 KT노동자인 김모 씨는 "전신주에도 올라가야 하는 등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가 하기는 힘든 일인데, 이들이 현재 남성노동자와 함께 2인 1조로 배치되어 현장에 나가 일하고 있다. 특히 현장 업무라서 탈의실이나 샤워시설을 사용해야 하는데 남성노동자들만 쓰던 시설을 함께 써야 해서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고객시설과에 발령된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KT노동자들에 따르면 회사측은 "영업직에 남을 것이냐? 지사 근무할 것이냐?" 두 가지 사항으로만 노동자들의 의사를 타진했고 대부분 노동자들은 연고지를 선호해 '지사 근무'를 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종섭 씨는 "지역에서 출퇴근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그 때문에 지사 근무를 많이 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회사 측은 이들의 근무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객시설과로 여성노동자들을 배치한 것이다. 하지만 KT 인사 담당자는 "그렇게 원해서 발령했고 구체적인 업무는 지사의 소관"이라며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도 "부대 시설은 다 구비되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측에서 현장 여성노동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탈의실의 경우 일부를 여성용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기도 하며 샤워장은 남성과 함께 번갈아 쓰고 있는데 번거로워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 남북 외 다른 지역 남성노동자의 경우도, 영업국 잔류 의사를 밝힌 사람 외에는 대부분 고객시설과로 발령되었고 일부는 요금관리과 채납 담당으로 발령되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번 인사발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듯이, 이 책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과거 및 현재 진단과 대안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4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국내 판례를 통해 쟁점별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은 이 분야의 국내 논의 흐름을 살피도록 돕는다. 또다른 논문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고찰하고 있어 국제법상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구제 방법들을 고찰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주요 자료들을 묶어놓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대만대체복무제 시찰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인권평화 활동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라는 화두는 군에 갔다왔던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만 하는 이들에게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심리·사회적 콤플렉스를 드러내게 한다. 일부는 불합리한 구조와 열악한 환경, 극한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견뎌냈다는 일그러진 자긍심으로, 일부에게는 비인격적 모독, 폭력적인 힘과 권위의 수용을 통해 죽음의 문화를 사회질서로 받아들이는 재사회화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평화와 종교에 따른 신념을 지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받아들여진다. 멀고도 가까운 평화는 한국사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어떻게 '인권'으로 받아들일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기사 처음으로>

태국 이주노동자 탄압에 '옐로 카드'

강제추방, 살해 등 인권침해 심각

태국 메솟 지역에 있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의 실상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이 태국 정부와 기업에 항의하며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에 나서고 있다.

태국 메솟 지역은 버마와 인접한 공업 지역으로 이 지역에만 8만에서 10만에 이르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버마 군부독재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소수민족 말살정책을 피해 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자들로서 미등록 상태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안하게 살고 있다.

이들의 노동 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평균 60~75시간 일하며, 심지어 메솟에 있는 한 의류공장에서는 75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잠도 못 자고 휴식시간도 없이 4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이 초과노동을 거부하자, 고용주는 "경찰을 불러 강제 출국시켜 버리겠다"며 이주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이들의 아이들 또한 열악한 노동으로 내몰리기는 마찬가지다. 한 달에 8백~1천 2백 바트(2만~3만 원)를 받으면서 온갖 궂은 일들을 하고, 의료 서비스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태국 정부는 이들의 인권침해 현실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1999년 한 해에만 29만여 명에 달하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했다. 또한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경찰 등 태국 관련기관들로부터의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2003년 5월에는 메솟에 있는 6명의 '합법'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살해된 후 잔인하게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살인범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목격자들과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버마로 추방해버렸다. 아시아법률센터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합법 여부를 떠나 버마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라도 강제추방과 살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3년 4월 폽프라 구역에서 경찰들이 한 버마 이주노동자를 연행해 '개집'에 구금했으며, 그 이주노동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경찰이 그를 불러 세우고는 가슴에 총을 쐈다"는 등의 사례를 들며 태국 정부의 반인권성을 고발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2004년 12월에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된 '영치우(버마어로 '신새벽'을 뜻함)노동자연합(아래 영치우)'에서 통역 자원활동을 하던 살람 씨가 태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도 영치우 사무장 모스웨 씨를 포함한 3명의 활동가들이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경찰에 수배돼 은신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학순정의평화기금,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태국 정부와 노동부에 살람 씨의 석방과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의 보장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상은커녕 50년 넘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일본 교토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토로 마을.

우토로는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을 위해 강제징용 했던 한국인들의 집단숙식처였다. 일본이 패전한 이후 강제징용 당한 재일 한국인들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들풀처럼 버려졌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은 그 자리에 부락을 형성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87년 5월 우토로 토지를 소유하던 니산자동차 계열회사인 니산차체가 주민들 몰래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땅을 팔았고, 이어 12월 이 부동산업체가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89년 (유)서일본식산은 세대주를 피고로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우토로 마을 사람들은 10년이 넘게 투쟁을 벌여왔지만 결국 패소,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이 문제가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치하에서 발생한 역사적·사회적 문제로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거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야만성을 비난하고 있다. 이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본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토로 주민에 대한 퇴거명령이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일반논평 4)와 △대안적인 주거마련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없다(일반논평 7)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률상 및 사실상의 차별과 싸우는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지원 집행위원은 "법적인 싸움은 이미 끝났지만, 우토로 문제는 과거 청산과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토로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토로가 과거 역사의 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15일 (토)
제 27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2.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3.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4. 나의 지문을 탐하지 말라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화성시에 있는 한 회사가 안전장비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 8명 전원이 화약약품에 중독돼 일명 앉은뱅이병인 '다발성 신경장애'를 앓고 있다.

이들이 2004년 8월부터 일을 했던 곳은 (주)동화디지털로 엘씨디, 디브이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말헥산'이라는 세척 약품으로 생산된 제품을 깨끗이 닦아 출고시키는 일을 해왔다. '노말헥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유해물질'로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을 경우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으로 독성이 침투해 신경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표시와 안전교육, 직접노출을 막기 위한 보호 장비 등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래 외노센터)는 "세척 공정에는 이주노동자들만이 일을 해왔다"며 "마스크는 가끔 착용하거나 장갑도 면장갑을 끼고 일을 하는 게 보호장비의 전부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점심 1시간과 저녁 30분의 식사시간 외에 아무런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 평균 14시간씩 대부분 서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무릎에 힘이 없고, 걷다가 자주 넘어지는 등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12월 19일 외노센터로 옮겨질 때에는 업고 옮겨야 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돼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해고가 두려워 말도 하지 못했다. 외노센터 이해령 상담위원은 "아프다고 하면 태국으로 쫓아 낼까봐 고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약만 먹으면서 참고 일해왔다"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자, 회사는 이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귀국을 종용, 급기야 12월 11일 씨리난 씨 등 노동자 3명을 귀국시켰다.

또 다른 문제는 회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것. 한 달에 고작 하루 정도 쉬면서 평균 160시간의 잔업과 총 400시간의 노동을 했지만 이들의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100만 원을 조금 넘을 정도였다. 이 상담위원은 "임금체불, 산재 등의 피해자가 오히려 강제 추방당하는 것이 '코리안 드림'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 외노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며, 최저임금과 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주)동아디지털을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상태다. 왈리 씨 등 5명은 현재 안산중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거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노센터는 태국으로 돌아간 3명의 노동자들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완치 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이 진행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배후에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자본이 자리잡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사찰의 결과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신종 수단인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2004년 8월 현자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회사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해당 노동자들의 회사 출입, 집회 참가, 집회 시 발언 내용 등은 일상적인 사찰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극도로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경우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권의 하위에 두려는 의도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가처분의 목적이 '방해행위 금지'라기 보다 '조합활동 금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의 재산권만 배려한 채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는 법원의 결정도 개탄스럽지만, '가처분'을 노조 탄압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여전히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에 죽음으로써 항거한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손배 가압류는 노동탄압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처분'은 새롭고 더욱 교묘해진 노동탄압의 '합법적인' 수단이다. 게다가 자본은 노조를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효율적인' 방식을 단숨에 확산하고 재생산했다. 현자 아산공장에 이어 12월에는 울산공장이 비정규직노조를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이다. 가처분이 제2의 손배 가압류가 되어서는 안된다. 손배 가압류에 항의하는 수많은 분노의 눈길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아래 워치)는 13일(현지시각)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워치는 이 자리에서 북 인권상황에 대해 "일상적으로, 그리고 터무니없이 거의 모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북을 철권통치와 개인숭배로 통치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난민 △구금시설과 고문 △사형제도 등 주로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나락 같은 북 인권상황을 기록해왔다"며 '실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진실과 추측의 경계가 모호하다. 탈북자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신뢰할만한 증언과 그렇지 못한 진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증언 외에 확인할 수 있었을 객관적 사실들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송환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북 정부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이탈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것, 즉 다른 나라의 출입국관리절차 위반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했다는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방인, 특히 선교사들의 북이탈주민 접촉은 '기획탈북'의 문제 속에서 섬세하고도 분석적으로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폭로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의 정치범 숫자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1990년대 기아사태 이래 최대 200만 명이 아사했다"는 부분도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케한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의 정치범 숫자를 발표한 적도 없으며, '200만 아사론'은 그야말로 그럴 것이라는 추측일 뿐 신빙성 있는 사실로 입증된 적은 없다.

워치의 이번 발표는 이외에도 사회권이나 발전권 등을 포함하여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야 할 '인권보고서'로서는 많은 흠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 인민의 인권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식량권'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카리타스 홍콩 등 국제원조단체는 북의 식량난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국제적 도움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이탈주민들의 이탈 동기가 '정치적 박해'만이 아닌 '경제적 동기'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식량난에 의한 이탈문제는 북 인권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워치는 이에 침묵했을 뿐이다.

워치의 보고서가 위험스러운 것은 북 정권을 적대시하는 대결구도 속에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재기해 온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고서 말미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하는 미국의 북인권법을 국제행위자의 핵심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패권적 개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한 흔적도 이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고립과 압박을 통한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북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시했다. 명망 있는 국제인권단체가 아닌 미국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오명을 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권보고서가 아닐 수 없다.

<기사 처음으로>

나의 지문을 탐하지 말라

지문날인반대연대, 인감증명법 폐지 촉구

지난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무인(지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아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인감증명법 폐지를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감증명 발급 시 '서명 또는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무인'을 강요한 사례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관련기사 2005년 1월5일자 참조] 시행령 개정은 인감증명발급 시 무인을 강요해온 일선 행정기관의 관행에 합법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이용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문날인제도를 온존시키려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얄팍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현행 인감증명법이 과연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인장까지 등록하여 관리, 공증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의 사용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인감의 위·변조가 완벽할 정도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날인까지 하며 인감증명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권침해까지 감수해 가며 실효성도 없고 국가가 책임도 지지 않는 공증업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는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려는 '고집'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하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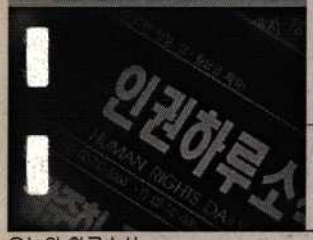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18일 (화)
제 27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① '춤추는 허리' 공연
2.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3.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① '춤추는 허리' 공연

장애여성들에게 연극이란

[편집자주] 인권운동이 새로운 양식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판에 박힌 기자회견, 집회, 법률투쟁 등에 갇혀 온 인권운동의 현재를 반성하고, 소수 활동가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방식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7회에 걸쳐 최근 새롭게 실험되고 있는 운동들을 소개해, 이들의 경험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인권운동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

장애여성공감 연극 팀 <춤추는 허리>는 지난 2003년 장애여성과 폭력을 주제로 처음으로 장애여성의 문제를 다룬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2004년 장애여성의 생애사를 다룬 연극을 공연했고, 올해도 새로운 주제에 맞는 장애여성 연극을 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장애여성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연극으로 표현해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지금껏 닫혀 있었던 장애여성들의 목소리와 문제를 장애여성 당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극팀을 기획하게 됐다. 팀장 겸 배우로서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서 연기를 하다보면 느끼는 것이 있다. 배우들이 단순히 연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들에게 연극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연극에 대한 열정 속에 자신들이 장애여성으로서 겪으며 살아온 삶들을 처절히 표현해 낸다.

연극은 워크샵을 통해 서로의 살아온 삶을 얘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본을 만들고 연습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장애여성의 생애사를 연극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처녀 시절, 그리고 중년기까지의 과정들을 차례차례 워크샵을 통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워크샵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연출자들이 이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상황극 등을 재연시키면서 본격적인 연극연습에 돌입했다. 상황극 등에서 나온 대사들을 바탕으로 연출자들이 대본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끝에 정기공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여성들은 연극을 한다는 열정 못지 않게 가슴 속 깊이 묻어 두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돌아보게 되며, 심적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 대중들이 장애여성들이 안고 살아가는 문제를 인식하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가가기 쉽고 색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연극'을 선택하게 됐다. 한 편의 연극을 통해 장애여성들의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효과는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정말 쉽고 편안하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공연을 통해 실감한다.

어떤 이들은 장애인 문제는 다 마찬가진데, 장애여성의 문제를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장애여성 문제는 장애남성들의 문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에 가정과 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은 장애남성에 비해 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장애여성의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여성의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춤추는 허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연극을 본 사람들은 <춤추는 허리>의 연극이 다른 장애인 연극과 다르다는 말들을 한다. 그 말 속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다른 장애인 연극,

내지는 장애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은 결말이 모두 훈훈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반면에 우리의 연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들의 지적처럼 우리의 연극은 그것이 다르다. 문제를 던지는 연극, 관객들에게 극이 제시하는 문제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연극. 그것이 바로 다른 연극이나 장애인을 소재로 한 여타의 작품들과 다른 것임을 말하고 싶다. 사실 장애인의 삶이 어찌 해피엔딩일 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 해피엔딩 뒤에 가려진 진실의 베일을 벗겨야 하지 않겠는가? 대중들이 우리의 연극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이 벌써 어떤 형식으로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춤추는 허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속에 장애여성의 문제가 깊이 각인되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날까지 <춤추는 허리>의 공연은 계속 될 것이다. 장애여성에게 연극이란 온 몸을 다해 표현하는 삶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박주희]

◎ 박주희 님은 장애여성공감 연극팀 <춤추는 허리> 팀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노동희망뉴스입니다. 방금 무노조 신화로 악명높던 '삼성'그룹에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일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면서 오늘과 같은 결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들에게 노조탄압, 장시간 노동, 직장내성희롱 등 노동현장에 뿌리깊은 인권문제가 해결된 미래를 가정해 '보고 싶은 인권뉴스'를 만들어보라고 했더니 죄다 '걸작'이다. 30대 후반 내지 40대의 실업계고 남자교사들이 주축을 이룬 자리. 처음에는 다들 '대본을 줘어주는 것도 아니고 몸까지 움직이라니 죽을 노릇'이라는 표정이더니 어느새 정곡을 찌르는 대사들과 익살스러운 몸짓들이 쏟아져 나온다.

얼마 전 전교조 참교육실천보고대회 노동실업분과 초청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좋아야 해보려는 의지도 생기는 법. 입말, 몸말로 자신들이 소망하는 노동현실을 표현해 보게 하고, 사진 해부나 사례 연구로 노동인권교육에 조금씩 다가서도록 했다. 해마다 수많은 제자들을 노동현장으로 내보내는 실업계 교사들이지만, 대다수가 처음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해 보는 순간이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3권, 노동자 프라이버시권 등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참여적' 방법론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실업계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무방비상태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노동인권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특히 학교교육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실업계에서는 온순한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직장예절교육'은 실시해도 노동인권을 배울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문계, 실업계를 불문하고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인권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이고, 그마저도 자본가의 시각에서 서술되었거나 '현실의 나의 문제'와 동떨어진 '죽은 지식'만을 전달하고 있을 따름이다. 토론, 단체협상 실습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비록 1년여 전부터 몇몇 단체가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에 나서면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천할 의지를 가진 교사들이 늘어나야 하고 이들을 위한 재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성희롱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라고…" 교육 도중 한 전교조 남교사가 뱉은 이 말은 교사 재교육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확인시켜주지만 말이다. 참여적 교육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 역시 적지 않은 공을 들여야 한다.

"권리 권리 했다가는 곧바로 잘려요." 현실에서 '사문화' 된 노동법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다. 법조항 중심의 지식 교육을 넘어 어떻게 인권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길러주는 교육을 만들 것인가. 세상살이야 어차피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체념과 절망을 어떻게 넘어서도록 할 것인가. 노동인권교육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산을 넘을 지혜를 자내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이들이 지금 노동인권교육에 나서야 한다.

◎배경내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 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17일 오전 이은영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통해 '혼합형1인1적제'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해 여성, 인권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혼합형1인1적제'를 통해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집적한 후, 본인과 국가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에 따른 정보를 출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적별신등록제실현연대 범용 활동가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정보의 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집적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가족증명, 혼인증명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집한 개인 정보들을 하나로 집적하는 대법원안은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수집으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의 신분등록부를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게 발급하게 한 것도 지나치게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용 활동가는 대법원안이 개인 신분등록부의 기본틀 중 배우자와 부모·자녀란을 설정함으로써, 여전히 이러한 형태의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못 박고 다른 형태의 가족은 소위 '결손가족' 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목적별공부'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대법원의 '혼합형1인1적제'를 찬성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신분등록원부에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어 국가가 개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대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하는 방식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국회가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 합의를 전제로 호주제 폐지를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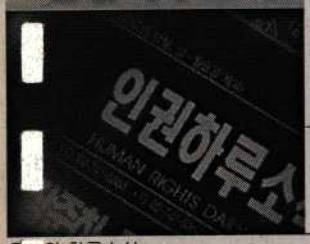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19일 (수)
제 27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2.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3.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실시하고 있어 학원 수강생들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된 수강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날인을 하도록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했다. 대리·허위 교육을 방지한다는 것이 그 이유. 이에 따라 많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수강생들에게 지문인식기에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 있는 한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는 유희정 씨는 "지문날인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요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씨에 따르면, 운전학원은 교육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지문인식과 학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카드로 수강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운전학원에 문의해 본 결과, 일부 학원 관계자들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지문날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학원의 수강생 관리 시스템과 경찰청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매일 수강생 출석 데이터를 경찰청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전북신문>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운전학원에서 편의상 지문 등록을 강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처하고…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종섭 활동가는 "지문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청이 학원에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지문날인을 통한 신원 확인을 부추겼으면서도, 인권침해 책임을 일선 학원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활동가는 "운전학원에서의 지문날인 의무화는 시민들을 생활현장에서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는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에서 지문날인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인감증명 발급 시 무인(지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아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권단체들의 반축을 샀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인감증명 발급 시 '서명 또는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고, 사생활의 일부인 신체정보를 통해서만 신원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상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문화관광부는 음악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도소 10000개를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래의 신문기사'라며 올린 글의 한 부분이다. 황당한 얘기지만 17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아래 저작